



제426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후원자의 정보제공 대상에 금융기관 이외에 전자금융업자도 추가〉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4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간편송금 업체에 후원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정보제공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금융기관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 ⑫<br>(생략)                                                                                                                                                                                                                                                                   |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 ⑫<br>(현행과 같음)                                                                                                                                                                                         |
| ⑬ 후원회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br>선임신고 등)제4항에 따라 신고된<br>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br>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br>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br>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전화 또<br>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br>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의 성명과<br>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br>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br>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br>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br>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br>야 한다. | ⑬ -----<br>-----<br>-----<br>-----<br>-----금융기관<br>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br>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br>금융업자”라 한다)-----<br>-----<br>-----<br>-----금융기관 및 전자금융<br>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br>장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br>래법」에도-----<br>-----. |
| ⑭ (생략)                                                                                                                                                                                                                                                                                        | ⑭ (현행과 같음)                                                                                                                                                                                                              |

후원금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sup>1)</sup>을 말하며, 후원 방식으로는 후원자가 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후원회에 직접 후원을 하거나 후원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http://www.give.go.kr))에서 간편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를 통해 후원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sup>2)</sup>에 따르면 후원회는 동법 제34조제4항<sup>3)</sup>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의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후원회에 알려주어야 함.

---

1)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2) 「정치자금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⑬ 후원회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 다)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2.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통적인 금융거래 방법 외에도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sup>4)</sup>를 통한 정치후원금 납부가 증가하고 있는바, 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게 후원자의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금융기관과 달리 전자금융업자는 후원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sup>5)</sup>

또한,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후원금 납부는 후원자가 신원인증을 받기 때문에 후원자의 인적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후원자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지 않고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 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도 입금의뢰인은 전자결제대행사<sup>6)</sup>가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영수증에 실제 후원자 대신 전자결제대행사의 명의를 기재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치자금 회계의

---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①전자자금이체업무, ②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③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④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⑤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카카오, 나이스정보통신, 다날, 토스페이먼츠 등이 있으며, 2024.4.기준으로 총 192개사가 등록되어 있음(금융위원회)

5)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의 입금의뢰인 인적사항 통보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음(2021.9.13.).

6) 전자금융업자의 한 유형으로 'PG(Payment Gateway)사'라고 불림.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원회의 회계처리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성명·연락처)를 제공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원활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및 정확한 회계보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36 |